

경운대학교 기획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경운대학교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과 제규정의 제정, 개폐 등의 조사연구 및 정비를 함에 있어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10.01.>

1. 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된다.
2. 위원은 경운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제 및 학사행정의 연구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구조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개폐, 정비
6. 교육관계 법규 및 규정자료의 조사, 연구
7. 제규정집의 편찬
8. 규정용어의 개선 및 정비
9.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전문위원) 제6조에 의하여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에는 필요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경운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조정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1.10.0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